

2017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업무 매뉴얼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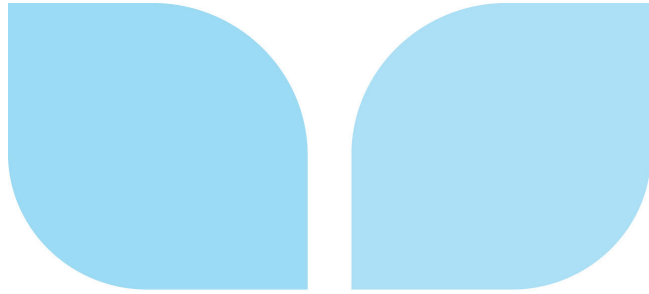
CONTENTS

| 2017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업무매뉴얼

- | | | |
|-----|----------------|--|
| 003 | 업무추진 체계 | 업무추진도
업무처리절차 |
| 007 | 제도 개요 | 목적
연혁 및 통계
용어정의
적용범위 |
| 015 | 인정요건 | 직무 외의 행위
구조행위
인과관계
기타 |
| 023 | 결정절차 | 신청
심사·결정
결과통보 |
| 029 | 예우 및 지원 |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고궁 등 이용지원
공직진출 지원
주택특별공급
국립묘지 안장(이장) |
| 039 | 권리 구제 | 이의신청
부상등급 변경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
| 043 | 참고자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집
기타 관련 법령 |

주요 변경 내용

구분		2016년	2017년
연혁 및 통계		• 2015년까지 통계	• 2016년 통계 추가
결정 절차	의사상자 증 발급	• 조폐공사	• 업무협약업체
예우 및 지원	보상금	• 202,913천원	• 209,000천원
	교육보호	• 관할 교육청	• 관할 시·도 교육청
	공직진출지원	• 6급 이하 공개경쟁 채용시험	• 6급 이하 채용시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식 신설, 개정 등
기타 관련 법령			• 공직진출지원(국가공무원 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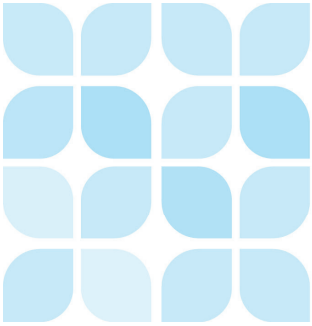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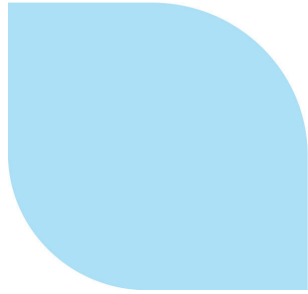


I

업무추진 체계

업무추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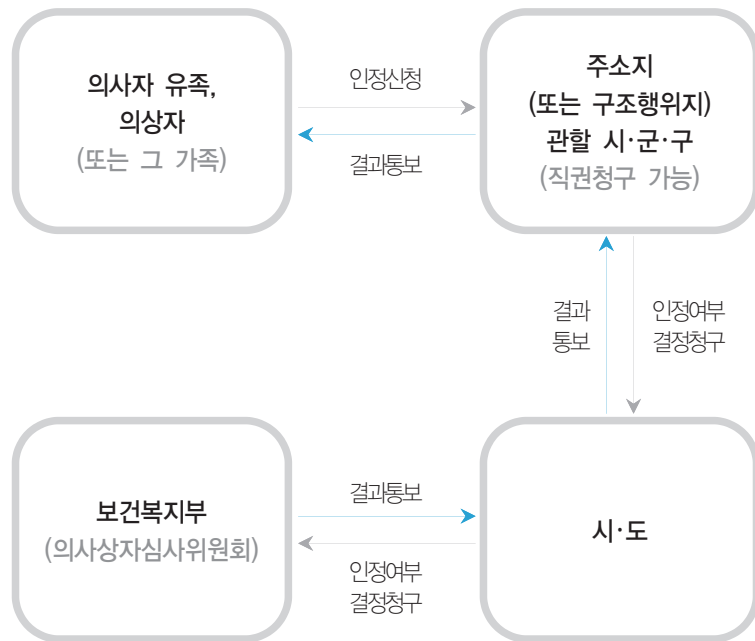
업무처리절차



업무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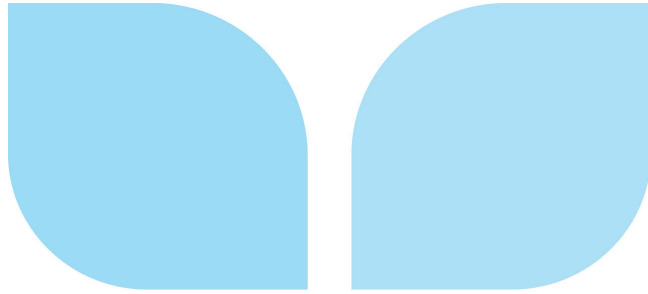
I

업무추진도



업무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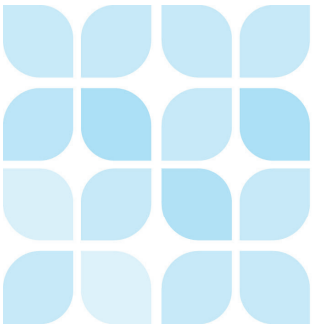
인정신청 결정청구	결과통보		예우 및 지원
	인정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접수 • 검토(자료보완) • 공적조서, 사실확인조사서 작성 • 시·도로 결정 청구 (원본보관, 스캔파일 제출) • 행복e음 신청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문서접수 • 배정 예산 자금 신청(회계시스템) • 신청인에게 의사상자 증서, 결과통보서 전달 및 각종 지원 사항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통보서 전달 • 이의신청 및 행정쟁송 가능함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으로부터 각종 지원 사항에 대한 신청을 받아 지원 실시 • 보상금 지급과 의사상자 증(이하 '증') 신청은 즉시 실시 되도록 추진 • 시·도로 유(가)족 현황 및 증 발급 신청 * 발급된 증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접수 • 검토(자료보완) • 검토서 작성 • 보건복지부로 결정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로 결과통보 • 재배정 예산 재배정 (회계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로 유(가)족 현황, 증 발급 신청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접수 • 검토(자료보완 요청 등) • 안건상정 • 의사상자심사 위원회 개최 •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 • 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로 결과통보 • 보상금 예산 재배정 • 의사상자 증서 및 결과통보서 시·군·구로 발송 • 행복e음 결정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 발급(의뢰) • 증 발급 통보 및 발송 * 증은 신청 시·군·구로 발송



II

제도 개요

목적
연혁 및 통계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제도 개요

II

목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

연혁 및 통계

연혁

- 1970 제정**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수난, 화재, 교통사고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의사상자 유족구호
- 1990 개정** 의사상자 보호법
의사상자 적용범위 확대·보상금 지급
- 1996 개정**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상금의 현실화, 신청절차 개선
- 2007 개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인정요건 구체화
부상등급 변경신청 절차 및 보상금 산정방법 마련

2011년 일부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구조행위를 위하여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이 법 적용, 고공 등 이용 지원 근거 마련

2014년 일부개정

이의신청 근거 마련

2015년 일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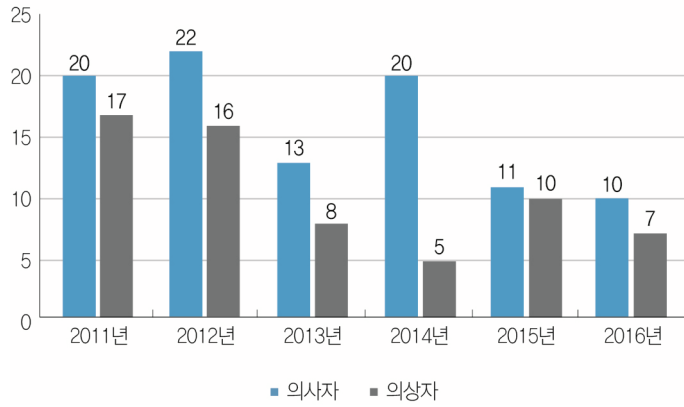
의사자 추모 등을 위한 기념사업 비용지원 근거 마련

통계

○ 의사상자 인정현황

구분	계	1971 ~ 1999	2000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746	234	326	27	37	38	21	25	21	17
의사자	498	159	228	15	20	22	13	20	11	10
의상자	248	75	98	12	17	16	8	5	1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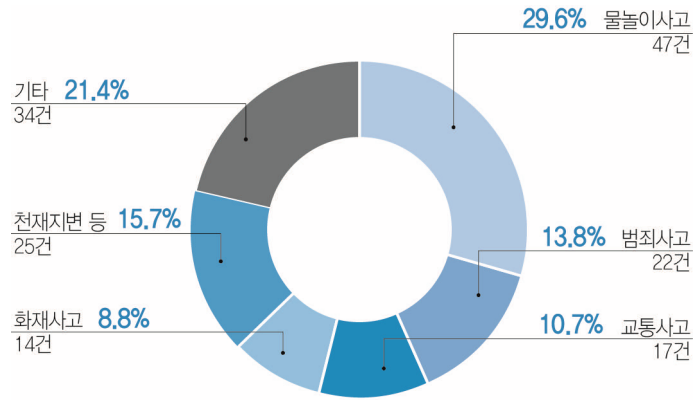
○ 의사자·의상자 현황(2011~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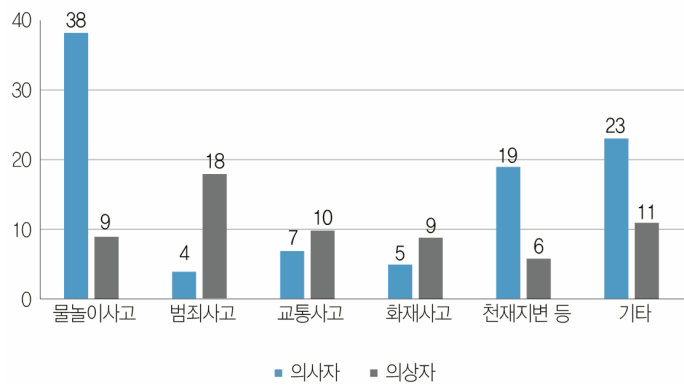
○ 사고유형별 인정현황(2011~2016)

연도	구분	사고유형(적용범위)						
		계	물놀이 사고	범죄사고	교통사고	화재사고	천재지변 등	기타
2011	의사자	20	12	1	1	1	0	5
	의상자	17	3	4	3	3	1	3
	계	37	15	5	4	4	1	8
2012	의사자	22	8	0	0	0	9	5
	의상자	16	4	8	1	0	1	2
	계	38	12	8	1	0	10	7
2013	의사자	13	5	2	0	0	2	4
	의상자	8	1	1	0	3	0	3
	계	21	6	3	0	3	2	7
2014	의사자	20	7	1	0	3	6	3
	의상자	5	0	1	2	1	1	0
	계	25	7	2	2	4	7	3
2015	의사자	11	4	0	3	0	1	3
	의상자	10	0	3	0	1	3	3
	계	21	4	3	3	1	4	6
2016	의사자	10	2	0	3	1	1	3
	의상자	7	1	1	4	1	0	0
	계	17	3	1	7	2	1	3
계	의사자	96	38	4	7	5	19	23
	의상자	63	9	18	10	9	6	11
	계	159	47	22	17	14	25	34

● 사고유형별 인정 건수·비율(2011~2016)



● 사고유형별 의사자·의상자(2011~2016)



용어 정의

법 제2조

● 구조행위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

● 의사자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

● 의상자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 의사자 유족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의상자 가족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적용 범위

법 제3조

1.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2.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6.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적용 예외

-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III

인정 요건

직무 외의 행위

구조행위

인과관계

기타

인정 요건

III

법 제1조

의사상자 인정 요건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구조행위)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인과관계)

직무 외의 행위

공식적·비공식적 직무와 전혀 관계없이 행한 구조행위

직무행위

- 직무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
- 법률·계약 등에 따라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일반적인 보호감독 의무가 있는 경우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

직무 외의 행위로 볼 수 있는가?

사례 1

사고요약	결정
간호조무사가 병원 화재발생 시 환자를 대피시키고 소방호스로 화재를 진압하던 중 사망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진료보조를 고유 업무로 하고 있어 화재진압은 직무 외의 행위로 보아 인정

사례 2

사고요약	결정
빌딩 전기과장이 폭우로 건물에 유입되는 빗물에 의한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 전기실로 갔다가 사망	전기시설관리를 위하여 전기실로 내려가 스위치를 내린 행위는 직무범위에 해당하여 불인정

구조행위

-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 급박한 위해에 처한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 직접적·적극적 행위

○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

행위자의 주관적 구조 의사 외에도 객관적 재난상황에서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안전배려 또는 상호협력의 수준을 넘어서는 자기희생적인 위험상황의 행위

위험을 무릅쓴 행위로 볼 수 있는가?

사례 1

사고요약	결정
흥기로 교회 교우를 살해하려는 행동을 제지하던 중 부상을	살해하려는 자의 행동을 제지하여 교우를 구조하고 부상을 입어 의상자 인정

사례 2

사고요약	결정
취객을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부족하고 가던 중 음주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로 부상	사회적 선행에 해당하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를 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불인정 * 타인이 처한 상황도 급박한 위해 상황이 아니며, 부족행위를 위험을 무릅쓴 행위로 보기 어려움

● **급박(急迫)한 위해(危害)**

사고 발생을 목격할 당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예외 사유

-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급박한 위해의 원인이 되는 경우
- 사건 발생 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의 복구·수색활동 등

급박한 위해상황으로 볼 수 있는가?

사례

사고요약	결정
강풍 피해로 파손된 축사 지붕 보수 중 떨어져 사망	강풍 피해 다음 날 행한 보수작업은 급박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워 의사자 불인정

● **다른 사람(타인)**

민법상 친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민법」에서 정한 친족의 범위(제777조)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타인을 구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사례 1

사고요약	결정
타인과 같은 집에 있다가 강도의 침입을 받고 제지하다가 부상	타인과 함께 강도의 침입을 받고 이를 격퇴한 것은 타인을 구조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불인정

사례 2

사고요약	결정
다리가 불편한 동생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선로로 떨어지자 형이 구하려고 뛰어들어 사망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를 인용하여 의사자 불인정

● 직접적, 적극적 행위

당시 행위자가 처한 상황과 그러한 행위로 행위자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종류와 정도, 구조행위의 구체적인 모양이나 형태와 적절성, 구조대상이 처한 위해의 긴급성 및 위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직접적,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가?

사례 1

사고요약	결정
'강도야' 라는 여성의 비명을 듣고 차량으로 도주하려는 강도의 옷을 잡아당기자 강도가 밀쳐 넘어지면서 부상	범죄 행위 이후 도주하는 강도를 적극적으로 제지한 행위 인정

사례 2

사고요약	결정
선박 침몰 시 다른 사람을 먼저 구조하라고 한 뒤 본인은 늦게 구조되어 저체온증으로 사망	본인보다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먼저 구조하라고 한 행위는 선행(양보)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직접적, 적극적인 구조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불인정

인과관계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사망(부상)이 구조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가?

사례 1

사고요약	결정
함께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승자의 구조를 돕고 병원에 후송된 후 사망	1차 사고에서 부상을 입어 사망 원인을 구조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상자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동료가 취할 수 있는 조력행위이므로 불인정

사고내용

2001. 11. 30. 22:00경,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봉고차를 타고 자율방범대 심야 방법순찰활동을 위하여 파출소로 가던 중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차창 밖으로 튕겨 도로상에 떨어져 정신없이 앉아 있다가, 자신은 괜찮다며 운전석에 다리가 긴 B씨를 구조해 줄 것을 구급대원에게 이야기하고 구급차 주변 통행 차량에 대한 교통정리와 B씨 구조에 필요한 유압구조장비 조작을 위해 유압호스를 잡아주는 등 구조 활동을 돕고, 이후 함께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급성 뇌출혈로 사망

* 대법원 상고 기각

사례 2

사고요약	결정
마을입구 국도의 제설작업을 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	심근경색이 제설작업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단순히 제설 작업한 상황을 급박한 위해 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어 불인정

기타

○ 의상자 등급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 시행령 제2조(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

규정된 부상등급에 해당되는가?

사례

사고요약	결정
주택 화재 시 거주인을 대피 시키고 화재진화 중 연기흡입	경미한 부상으로 의상자 부상등급에 해당하지 않아 불인정



IV

결정절차

신청

심사·결정

결과통보

결정절차 IV

신청

인정신청 · 결정청구

법 제5조

시·군·구
검토 및 확인

○ 인정신청

- 의사자 유족, 의상자(가족 포함)는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청구 가능

○ 신청구비서류

- 의사상자 인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
-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공적조서 등	시·군·구는 신청자의 구조행위를 확인하여 공적조서와 사실확인조사서 작성 제출
구조행위 확인 자료	경찰 수사기록(수사결과, 내사결과 등), 목격자 진술조서 * 진술조서는 수사(내사)결과에 기록된 진술자 전원의 진술조서 제출 *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수사 종결 후 신청
직무관련 자료	직무행위와 구조행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내용이 나오는 근로 계약서 등 필요(계약서에 내용이 없을 경우 해당 기관에 확인하여 제출) 산업재해와 관련 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수령 확인 자료 * 산재와 의사상 행위는 별도로 보나 산재의 판단 자료 등은 심사에 참고
부상 확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병원의무기록 사본, 후유장 해가 있을 경우 후유장해진단서 * 의원급 의료기관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등은 불필요
기타	언론보도 자료, 탄원서, 자필 진술서 등은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가 아닌 참고자료이므로 반드시 첨부해야 할 자료는 아님
주소 확인	대상자, 신청자의 정확한 주소 파악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확인(첨부)
재산피해 명세서	구조행위와 관련한 재산피해가 있을 경우 제출

시행규칙 제3조

● **직권에 의한 청구 시 구비서류**

신청 구비서류와 동일

- 직권 청구서, 의사상자 발생보고서 추가 작성

시행령 제9조

● **의사상자 인정신청 안내**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사상자 적용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직권 청구 가능

법 제5조

● **결정청구**

(시장·군수·구청장)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받으면 구비서류 누락 여부 확인 및 시·군·구가 작성해야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로 제출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원본은 시·군·구에서 보관

* 스캔 후 '대상자 성명-자료명'으로 저장(부득이 스캔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발송)

예) 홍길동-의사상자 인정신청서, 홍길동-경찰 수사결과서,
홍길동-진술조서, 홍길동-진단서, 홍길동-진료내역서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의사상자 신청 관리'에 신청 등록

(시장·도지사) 시·군·구에서 제출 된 서류를 검토하여 자료 미비 시 보완 후 보건복지부로 결정 청구

의사상자 인정신청 검토서 작성

(검토서를 작성하면서 자료 미비 등을 파악하여 보완)

심사·결정

법 제5조

○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 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의사자로 인정 결정의 경우 부상등급을 함께 결정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의결 사항(법 제4조)

1.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의상자의 부상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
5.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결과통보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구조 행위지 관할 시·도지사(시·군·구)가 통보를 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시·군·구)에게 알려야 함

결과통보

(결과통보서) 결과통보서는 신청 시·군·구로 발송

(의사자 증서)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고 연장자 1명에게만 발급

(의상자 증서) 의상자

* 불인정 대상자에게는 결과 통보서와 함께 이의신청 또는 행정쟁송을 할 수 있음을
안내

의사상자 증 발급

• 발급대상

(의사자 유족증)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도 발급

(의상자 증) 의상자와 그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시·군·구에서는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가족, 유족)에게 사진 등을 제출받아
증 발급 신청(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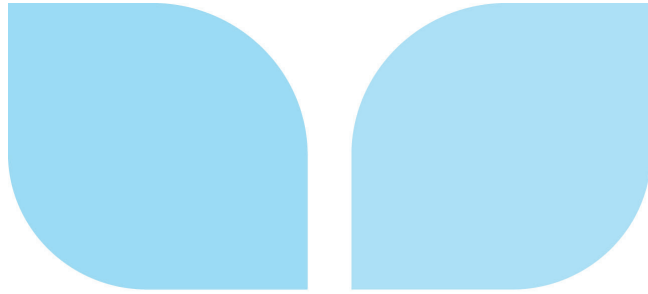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사진은 스캔(.jpg 파일) 후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 (해상도) 300DPI (가로) 236픽셀(2cm) (세로) 319픽셀(2.7cm)

- 의사상자 증은 업무협약업체를 통해 제작되며, 월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에게 기일이 소요됨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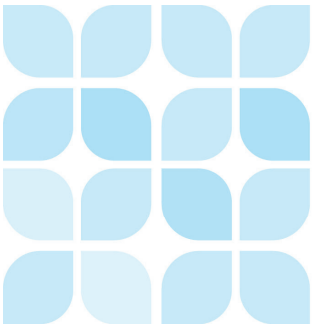
- 발급된 증은 신청 시·군·구로 우편 발송, 시·군·구에서 신청인에게 전달



V

예우 및 지원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고궁 등 이용지원
공직진출 지원
주택특별공급
국립묘지 안장(이장)



예우 및 지원



보호기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신청기간

의사자(의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교육보호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보상금

법 제8~10조

● 보상금 결정

지급수준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상응하게 결정

결정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결정하여 고시

● 지급대상 및 금액

의사자 유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기준으로 지급
(2017년 209,000천원)

의상자 부상 등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100/100~5/100

부상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급비율	100	88	76	64	52	40	20	10	5

● 지급순위

의사자	의상자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의상자 본인

보상금 지급 (보상금은 구조행위를 한 해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지급)

- 의사상자로 인정 된 경우 시·군·구에서는 의사자 유족, 의상자에게 보상금지급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보상금 지급
 -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
 - *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와 함께 시·도로 예산을 재배정하게 되니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회계부서와 협의하여 시스템에 자금(보상금액) 요청(복지부 자금 확정 후 지출가능)
 - 유족(가족) 현황 작성 제출
-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 지급(타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미지급)

법 제17조

● 보상금의 지급 받을 권리

의사상자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

법 제19조

● 보상금의 환수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보호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 또는 보호에 사용된 비용은 환수

- 환수 시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의료급여

법 제11조

● 적용대상

의사자	의상자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1~6급 의사자 본인

● 급여자격

1종 의료급여

● 급여 개시일

의사상 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 의사상자의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자격 취득 등 관리
 - 유족의 경우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자격이 주어지므로 각각 신청하도록 안내
 -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때부터 의료급여를 실시하게 되므로 의사상자 인정일 이전의 의료비 반환 등 조치(의료비반환신청서)

교육보호

법 제12조

● 적용대상

의사자	의상자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적용범위

초·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교육보호 대상자 관리

- 교육급여 지급절차(교육부)
 - 신청접수(대상자 확인)
 - 신청서와 확인사항을 학교 관할 시·도 교육청으로 문서통보

*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지급

* 교육보호는 교육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방안 안내'를 참고하여 대상자 관리

취업보호

법 제13조

○ 적용대상

의사자	의상자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1~6급 의상자 및 가족(배우자, 자녀)

의사자 유족, 의상자 등으로부터 취업보호 신청을 받으면 관내 취업알선센터, 각종 학원 등에 의뢰하여 구직 활동 지원

* 지자체 조례 등에 의사상자 우대 관련 사항 여부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 시 가점 대상으로 지원 가능

장제보호

법 제14조

○ 적용대상 의사자

○ 지급 의사자의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장제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고

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15조

○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률

100/100	고궁 및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 제외),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50/100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해당 시설에서는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을 확인하여 요금감면

시·도, 시·군·구에서는 관내 해당 시설에 대하여 의사상자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공직진출 지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적용대상

의사자	의상자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1~6급 의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

○ 적용범위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 가산점

의사자	의상자
만점의 5%	(본인) 만점의 5% (배우자, 자녀) 만점의 3%

*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

의사상자 공직진출 지원

- 대상 확인 방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의사상자 증서, 가점 대상자와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표 등본(증명서 또는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인 소 판결문 등의 서류)
- 대상자 여부 등 확인 기관
 - 주소지 시·군·구 복지담당(의사상자업무) 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주택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은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음

“국민주택 등”이란 국민주택(「주택법」 제2조 제3호)과 국가·지방자치 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2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써 공공택지(「주택법」 제2조5호)에 사업계획의 승인(「주택법」 제16조)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함(「주택법」 제2조3호의2)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공급받을 수 있음

○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은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입주자공모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음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함(「주택법」 제2조3호의4)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10퍼센트 범위에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음

국립묘지 이장(안장)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

의사자	의상자
의사자 본인	1~3급 의사자 중 사망한 자

○ 신청 절차

-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안장(이장) 신청서 등을 제출
-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상 유무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 안장 대상자 결정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여부 결정 후 통보

시·군·구에서는 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 중 사망한 자의 유족이 국립묘지안장을 희망할 경우 신청을 받아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제출

- 보건복지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안장신청
-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 의사상자가 안장 될 수 있는 국립묘지는 서울현충원(위패, 납골당), 대전현충원(위패, 의사자 묘역)
 - * 국립묘지안장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국립묘지관리사무소에서 안장 절차 추진
- 국립묘지안장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참고



VI

권리 구제

이의 신청

부상등급 변경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권리 구제

VI

이의신청

법 제6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에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이의신청서와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

신청 기한

-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통보 받은 날) 우편 또는 직접 통보서를 수령한 날
- 시·군·구에서는 인정여부 결과통보서의 수령일 확인이 가능 하도록 등기 우편으로 발송

신청 서류

- 이의신청서
-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 신청인이 직접 보건복지부로 신청(우편 신청 가능)
*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시·군·구(시·도)에서 접수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 가능

결정, 통보

-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 다만,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부상등급 변경신청

법 제6조

- 의상자가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
신청 절차는 의사상자 인정신청 절차와 동일

신청서류

- 부상등급 변경신청서
- 의상자 인정 당시 의상자에 대하여 발행한 진단서 1부
- 변경신청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진단서 1부
- 장애·후유증 등 부상 악화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는 반드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

신청방법

- 시·군·구에서 접수하여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제출

행정심판 · 행정소송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가능

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청구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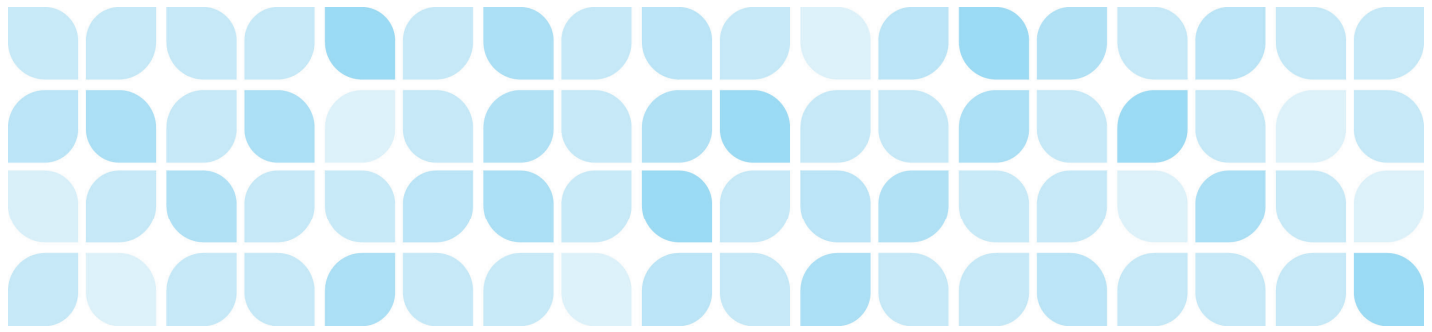
- 행정소송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청구 기관

- 행정법원





참고자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집

기타 관련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집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시행규칙 별지서식)

차 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 46	제1조(목적) / 46	제1조(목적) / 46
제2조(정의) / 46	제2조(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 46	
제3조(적용범위) / 47	제2조의2(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 47	
제4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 / 49	제3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 / 49	
	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50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 50	
	제5조(회의) / 50	
	제6조(간사 및 서기) / 51	
	제7조(수당 등) / 51	
	제8조(운영세칙) / 51	
제5조(인정신청 등) / 51	제9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 51	제2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 51
		제3조(직권에 의한 청구) / 53
	제10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 54	제4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 54
제6조(부상등급 변경신청) / 56	제11조(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 56	제5조(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 56
제6조의2(이의신청) / 57		제5조의2(이의신청) / 57
제7조(영전의 수여 등) / 57		
제7조의2(기념사업) / 5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보상금) / 58	제12조(보상금) / 58	
제9조(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 59	제13조(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 59	
	제14조(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보상금) / 59	
제10조(보상금 지급순위) / 59	제15조(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 59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 59
제11조(의료급여) / 61	제16조(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 61	제7조(의료비의 반환) / 61
제12조(교육보호) / 63		
제13조(취업보호) / 63	제17조(취업보호의 신청 및 조치) / 63	제8조(취업보호의 신청) / 63
제14조(장제보호) / 64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 64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 64	
제16조(보호기관) / 65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65	
제17조(권리의 보호) / 66		
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 66		
제19조(보상금의 환수 등) / 67		
부 칙 <법률> / 67	부 칙 <대통령령> / 67	부 칙 <보건복지부령> / 6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조(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p>제1조(목적)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p> <p>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p> <p>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p> <p>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개정 2011.8.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2.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 	<p>제2조의2(통상적인 경로와 방법)</p> <p>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2.1]</p>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p> <p>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p> <p>6.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p> <p>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p> <p>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p> <p>2.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p> <p>제4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1.28></p> <p>1.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p> <p>2. 제6조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p> <p>3. 제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p> <p>4.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p> <p>5.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제3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p> <p>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0.3.15></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4.11.19></p> <p>1. 기획재정부, 국민안전처, 국가보훈처 및 경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p> <p>2. 의학, 법학 또는 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p> <p>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 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3. 재해구호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p> <p>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본조신설 2015.12.31.] [시행일 : 2015.12.31.]</p> <p>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조(인정신청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p> <p>② 간사 및 서기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p>〈개정 2008.2.29., 2010.3.15〉</p> <p>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p> <p>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9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의사상자 인정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p>	<p>제2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려는 자는</p>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p>	<p>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p> <p>②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훼손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재산피해명세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p> <p>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2. 사실확인조사서 3. 공적조서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p>	<p>별지 제1호서식의 의사상자인 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인 소판결문 등의 서류 1부(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p>②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훼손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재산피해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다</p>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사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부상등급”이라 한다)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p> <p>〈개정 2008.2.29, 2010.1.18〉</p>	<p>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상자 발생 보고서, 공적조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개정 2008.2.29, 2010.3.15.〉</p>	<p>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리견적 명세서 또는 수리를 한 자가 발행한 영수증과 그 명세서 1부 2. 그 밖에 손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2.3〉</p> <p>④ 영 제9조제3항제2호의 사실확인조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p> <p>제3조(직권에 의한 청구)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사상자 인정 직권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확인조사서 1부 2. 별지 제5호서식의 의사상자 발생 보고서 1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0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9조제1항에 따라</p>	<p>3. 공적조서 1부</p> <p>4.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p> <p>5. 검찰 또는 경찰관서의 사건 처리 관계서류 사본 또는 사실조회 회보서 1부</p> <p>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조행위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첨부하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게 되는 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구조행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2.3></p> <p>제4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0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p>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 받은 사실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신청인(이하 “인정신청인”이라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p> <p>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정신청인 및 제3항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등의 발급 대상자에게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 및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 증서 및 의상자증(이하 이 항에서 “의사상자 증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의사상자 증서등의 발급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의사상자 증서등을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의사상자 증서등의 발급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보서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3.19.></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의사자 증서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의사자 유족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의상자 증서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의상자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사자 증서: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고 연장자 1명에게만 발급한다. 2. 의사자 유족증: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도 발급한다. 3. 의상자 증서: 의상자 4. 의상자증: 의상자와 그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p>③ 영 제10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사자 유족, 의사상자 및 의상자 가족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가점 대상자가 의사상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5서식의</p>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6조(부상등급 변경신청) ① 의사상자가 그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제5조제5항에 따라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상등급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제5조제2항 및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의 신청절차 및 인정 여부에 관하여 준용한다.</p>	<p>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의 의사상자 인정결과 의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로 본다.</p> <p>[전문개정 2012.2.1.]</p> <p>제11조(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의사자는 부상등급 변경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p> <p>② 부상등급 변경신청의 처리절차 및 인정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10조를 준용한다.</p>	<p>의사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p> <p>제5조(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상등급 변경을 원하는 의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상등급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사상자 인정 당시 의사상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2. 변경신청 전 3개월 이내에 의사상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3. 그 밖에 장애·후유증 등 부상 악화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서는 별지</p>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6조의2(이의신청) 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에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p> <p>제7조(영전의 수여 등) 국가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상훈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9호서식과 같다.</p> <p>제5조의2(이의신청)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p> <p>②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12.30.> [본조신설 2014.7.29.]</p>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7조의2(기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5.12.31.] [시행일 : 2015.12.31.]</p> <p>제8조(보상금) ① 국가는 의사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 지급액·지급방법이나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보상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p> <p><개정 2008.2.29, 2010.3.15></p> <p>② 의사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은 별표 2와 같다.</p> <p>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사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의사자 및 의사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p>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9조(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① 국가는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의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의 보상금액은 그 물건의 교환가격 또는 필요한 수리비로 한다.</p> <p>③ 제1항의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한다.</p> <p>④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범위·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상태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되거나 수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구조행위 당시 그 물건의 교환가격으로 할 것 2.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으나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비로 할 것 <p>제14조(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보상금) ① 제11조에 따라 의사상자의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 그 보상금은 변경된 부상등급의 보상금에서 종전에 지급한 부상등급의 보상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변경된 부상등급의 보상금은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p>	
<p>제10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의사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p>	<p>제15조(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 방법) ① 제10조에 따라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면 보상금지</p>	<p>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영 제15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p>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p> <p>② 태아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p>	<p>급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개정 2008.2.29, 2010.3.15, 2012.2.1〉</p> <p>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 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p> <p>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은 의사상자의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p>	<p>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連名)으로 신청하여야 한다.</p> <p>〈개정 2012.2.3〉</p> <p>1. 보상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p> <p>가. 신청인이 의사자 본인인 경우 :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p> <p>나. 신청인이 의사자유족인 경우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판결문 등의 서류(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선순위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2. 통장 사본 1부(보상금을 예금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②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p>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1조(의료급여) ① 의상자 및 사자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는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전에 의상자 또는 사자유족이 지급한 의료비의 반환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2008.2.29, 2010.1.18〉</p>	<p>제16조(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법 제11조제1항 단서, 법 제12조 단서 및 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란 별표 1의 부상등급이 제7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를 말한다.</p>	<p>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상자 인정신청인과 보상금 지급신청인이 같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상금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2.3.〉</p> <p>제7조(의료비의 반환)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료비반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개정 2012.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상자 증서 사본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2.3></p> <p>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반환을 신청한 의사자 또는 의사자유족(이하 “의료비반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비반환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반환할 것 2. 의료비반환 신청인이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2종 수급권자인 경우 : 해당 보장기관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반환할 것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2조(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사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사자 및 그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3조(취업보호) 의사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사자 및 그 가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7조(취업보호의 신청 및 조치)</p> <p>①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를 받으려는 의사자와 그 가족 및 의사자유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관에 취업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small>〈개정 2008.2.29, 2010.3.15, 2012.2.1〉</small></p> <p>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호기관은 신청자의 연령·학력·자격 및 부상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보호기관이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small>〈개정 2008.2.29, 2010.3.15〉</small></p>	<p>제8조(취업보호의 신청)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업보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small>〈개정 2012.2.3〉</small></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상자증서 사본 1부 면허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이력서 1통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4조(장제보호) 의사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를 실시한다.</p> <p>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사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4.] [중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8.4>]</p>	<p>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p> <p>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사자. 다만, 의사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p>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p>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호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2.3.></p>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6조(보호기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애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p> <p>[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8.4>]</p>	<p>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사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사자의 의사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p> <p>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2.2.1.]</p> <p>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의료급여 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7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1.8.4.>]</p> <p>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애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교육보호의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 당시에 교육보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보호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8.4.>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1.8.4.>]</p>	<p>시에 관한 사무</p> <p>5.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보호 실시에 관한 사무</p> <p>6. 법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에 관한 사무</p> <p>7. 법 제14조에 따른 장애보호 실시에 관한 사무</p> <p>8. 법 제19조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무 [본조 신설 2012.1.6.]</p>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9조(보상금의 환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보호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가 받은 보상금 또는 보호에 사용된 비용을 환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p> <p>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8조에서 이동 〈2011.8.4.〉]</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법률 제8609호, 2007.8.3.〉</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의사상자 인정결정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조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4조(물건의 멸실·훼손에 따른</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대통령령 제20581호, 2008.1.3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의상자 부상등급 및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조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특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구조행위에 대한 의사자유</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36호, 2008.2.4.〉</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조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5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구조행위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구조행위를 하던 당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행한 구조행위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 종전의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2006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 2. 의사자에 대한 보상금 : 종전의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2006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제1호차목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한다.</p> <p>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p>	<p>족에 대한 보상금은 1억 9693만 8000원으로 한다.</p> <p>제4조(의사상자 인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신청을 한 자는 이 영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자 ②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의사자로서 사망한 사람 ③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자유족</p> <p>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상금</p> <p>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의4 제2호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p> <p>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2조제2항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은”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으로 한다.</p> <p>⑥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p> <p>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p>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3〉 까지 생략</p> <p>〈48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제3항·제4항 본문·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p> <p>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p>	<p>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20679호, 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p> <p>〈5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p> <p>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p> <p>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36호, 2008.2.4.〉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p>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1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p> <p>〈485〉부터 〈76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p> <p>제9조제1항·제2항·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p> <p>〈52〉부터 〈80〉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21087호, 2008.10.20.〉</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p>	<p>〈65〉까지 생략</p> <p>〈6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p> <p>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p> <p>〈67〉부터 〈94〉까지 생략</p>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p> <p>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p> <p>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p> <p>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p> <p>제3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 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p>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p>	<p>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p> <p>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p> <p>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p> <p>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p> <p>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2〉 까지 생략 〈12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p>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제3항·제4항 본문·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p> <p>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p> <p>제11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p> <p>〈97〉부터 〈137〉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관”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한다.</p> <p>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p> <p>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p> <p>제9조제1항·제2항·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p> <p>〈124〉부터 〈187〉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제2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p> <p>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p> <p>〈61〉부터 〈84〉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9.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006호, 2011.8.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22493호, 2010.11.15.〉 (은행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p> <p>〈7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2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p> <p>〈77〉부터 〈115〉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23488호, 2012.1.6.〉</p> <p>(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23582호, 2012.2.1.〉</p> <p>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보건복지부령 제103호, 2012.2.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p>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의사상자 인정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사상자의 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이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받은 때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12363호, 2014.1.28.〉</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한다.</p>	<p>2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의상자증 및 의사자 유족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2호·제4호,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보건복지부령 제253호, 2014.7.29.〉</p> <p>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4>까지 생략</p> <p><3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 국가보훈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p> <p><316>부터 <418>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p>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법률 제13659호, 2015.12.29.〉</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p> <p>(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보건복지부령 제388호, 2015.12.31.〉</p> <p>(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술위헌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보건복지부령 제469호, 2016.12.3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구조행위자와의 관계	
	주소		
구 조 행 위 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구조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사 고 내 용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요지		
	상해정도		
사 고 처 리 경 찰 관 서		담당경찰관	
		전화번호	
위 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	내용 (적용된 다른 법률)		
	지급일자	지급자	
	금액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210mm×297mm(백상지 12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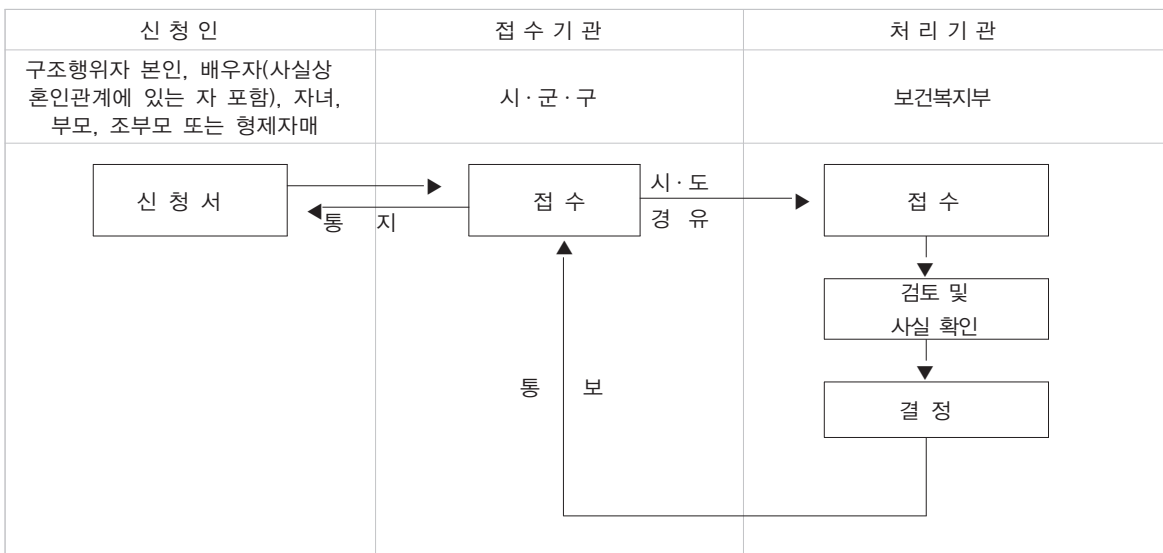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재 산 피 해 명 세 서

성 명:

년 월 일 현재

사 고 개 요 (재산 피해 사유)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개요			
	물건의 멸실·훼손	피 해 액	원	
내 용				
위 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	내용 (적용된 다른 법률)			
	금액			
	지급일자		지급자	

재 산 피 해 세 부 내 용

(단위: 원)

품 종	수 량	용 도	규 격	취 득 연 월 일	피 해 의 정 도	복 구 에 필 요 한 비 용	복 구 전 시 가	복 구 후 시 가	비 고
계									

비 고: 그 외 재산에 대하여는 이 양식에 준하여 신청인이 작성합니다.

구 비 서 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리견적 명세서 또는 수리를 한 자가 발행한 영수증과 그 명세서 1부 2. 그 밖에 손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190mm×268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12. 30.>

사 실 확 인 조 사 서

구 조 행 위 자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 고 내 용 확 인 (6하 원칙)	발생일시	발생장소	
의 사 상 자 추 천 사 유			
조 사 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확 인 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위 사람은 사실조회 및 현지조사 결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120g/m²)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2.3>

의사상자 인정 직권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구 조 행 위 자	성명			
	전화번호	직업		
	주소			
구 조 행 위 주 요 내 용 (6 하 원 칙)				
의 사 상 자 인 정 직 권 청 구 사 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직권으로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12. 30.>

의사상자 발생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구 조 행 위 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구조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사 고 내 용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요지		
	상해정도		
사 고 처 리 경 찰 관 서			담당경찰관
			전화번호
위 사 고 와 관 련 하 여 다 른 법 률 에 따 라 이 미 지 급 받 은 금 액	내용 (적용된 다른 법률)		
	지급일자	지급자	
	금액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의사상자 발생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12. 30.>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사상자 인정신청인 또는 의사상자 증서 등의 발급대상자) 귀하

의 사 상 자 인 정 신 청 내 용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구조행위자와의 관계	
구조 행위자 (심사 대상)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의 사 상 자 인 정 결 과				
심사위원회	○○○○년 제○○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인정결정일	○○○○년 ○○월 ○○일		구조행위일	○○○○년 ○○월 ○○일
인 정 결 과	의사자/의상자 인정/불인정 여부		부상등급 (의상자의 경우)	
	의사상자 증서 번호	제 호	의사자/의상자 보상금	원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원
			총 보상금	원

210mm×297mm(백상지 120g/m²)

제 호

의사자 증서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결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휘 장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16. 12. 30.>

(앞 쪽)

발급번호	
의사자 유족증	
사 진 (2cm×3cm)	성명:
	생년월일:
	의사자와의 관계:
	증서번호:
	인정결정일: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85mm×55mm(PVC카드)

(색상: 연녹색)

(뒤 쪽)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 증을 드립니다.

- ▶ 이 증에 따라 이용가능한 국·공립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궁, 능원, 공원,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휴양림,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무료)
 - 공연장, 체육시설(50%)
-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의 대관전시, 대관공연은 무료입장 제외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제 호

의상자 증서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으로 결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회 장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서식] <개정 2016. 12. 30.>

(앞 쪽)

발급번호	
의 상 자 증	
사 진 (2cm×3cm)	성명:
	생년월일:
	의상자와의 관계:
	의상자등급:
	증서번호:
	인정결정일: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85mm×55mm(PVC카드)

(색상: 연녹색)

(뒤 쪽)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 증을 드립니다.

- ▶ 이 증에 따라 이용가능한 국·공립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궁, 능원, 공원,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휴양림,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무료)
 - 공연장, 체육시설(50%)
-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의 대관전시, 대관공연은 무료입장 제외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제 호 <h2 style="margin: 0;">의사상자 증명서</h2>			
의사상자	성명	의사자증서번호	
		의상자증서번호 (의상자등급)	(급)
발 급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의사상자와의 관계
	주소		
용 도	채용시험 가점	가점비율	%
제출처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사자 유족·의상자·의상자 가족)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p> </div>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width: 150px; height: 10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직인</p> </div> </div>			

210mm×297mm[백상지(150g/m²)]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12. 30.>

부상등급 변경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의 상 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의상자 인정일		의상자 등급	
	부상부위		장애등급	
	부상 장소 및 사유			
	치료병원	1.	2.	3.
	치료기간		치료과	
부 상 등 급 변 경 요 청 사 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부상등급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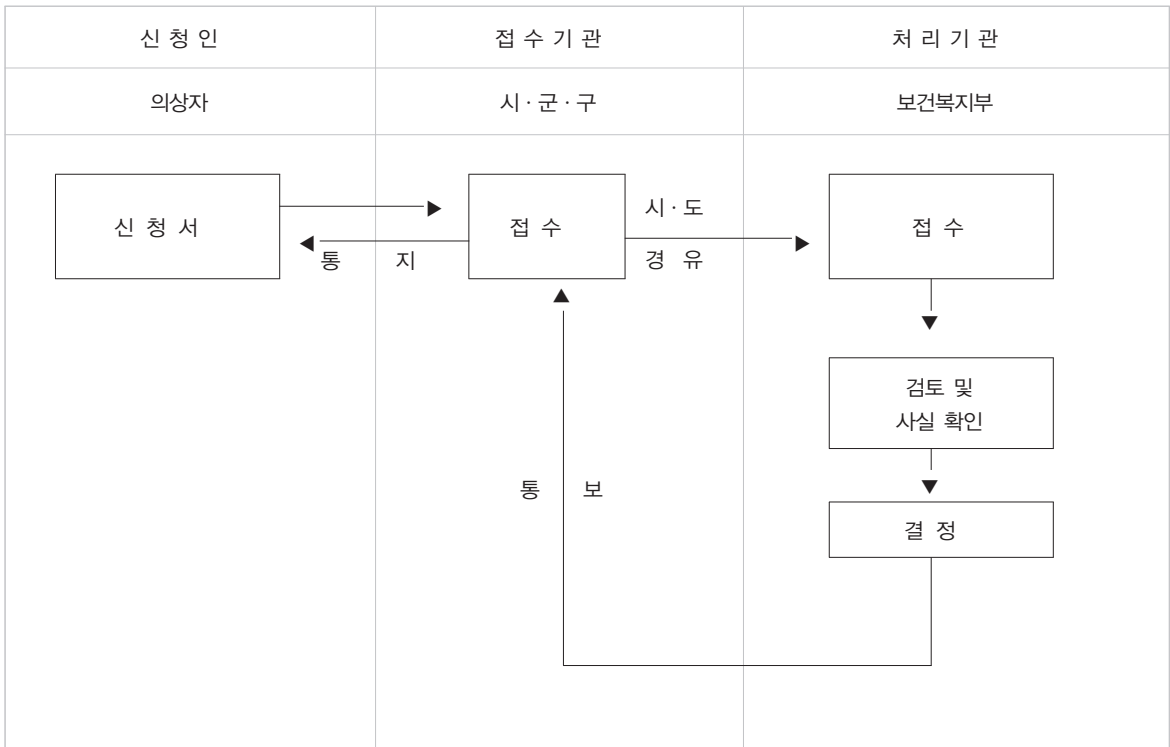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의상자 인정 당시 의상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2. 변경신청 전 3개월 이내에 의상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3. 그 밖에 장애·후유증 등 부상 악화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120g/m²)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12. 30.>

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상등급 변경신청에 대한 인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부상등급 변경신청인) 귀하

의상자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기 존 인 정 결 과	심사위원회	○○○○년 제○○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인정결정일	○○○○년 ○○월 ○○일			
	의사상자 증서 번호	제 호	기 존 부 상 등 급		
	보 상 금	기존 의상자 보상금			원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 한 보상금			원
		기존 총 보상금			원
부 상 등 급 변 경 신 청 결 과	심사위원회	○○○○년 제○○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변경 결정일	○○○○년 ○○월 ○○일			
	변경된 부상등급				
	변경된 부상 등급의 해당 보상금			원	
	기존 의상자 보상금			원	
	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추가 보상금			원	

210mm×297mm(백상지 120g/m²)

이 의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결정내역	통보받은 날짜	통보받은 내용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	구체적 내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의사상자 인정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 이의신청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의사상자 인정 이의 신청인 또는 의사상자 증서 등의 발급대상자) 귀하

의 사 상 자 인 정 이 의 신 청 내 용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조행위자와의 관계	
구조 행위자 (심사 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의 사 상 자 인 정 결 과				
심사위원회	○○○○년 제○○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인정결정일	○○○○년 ○○월 ○○일	구조행위일	○○○○년 ○○월 ○○일	
인 정 결 과	의사자/의상자 인정/불인정 여부		부상등급 (의상자의 경우)	
	의사상자 증서 번호	제 호	의사자/의상자 보상금	원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원
총 보상금			원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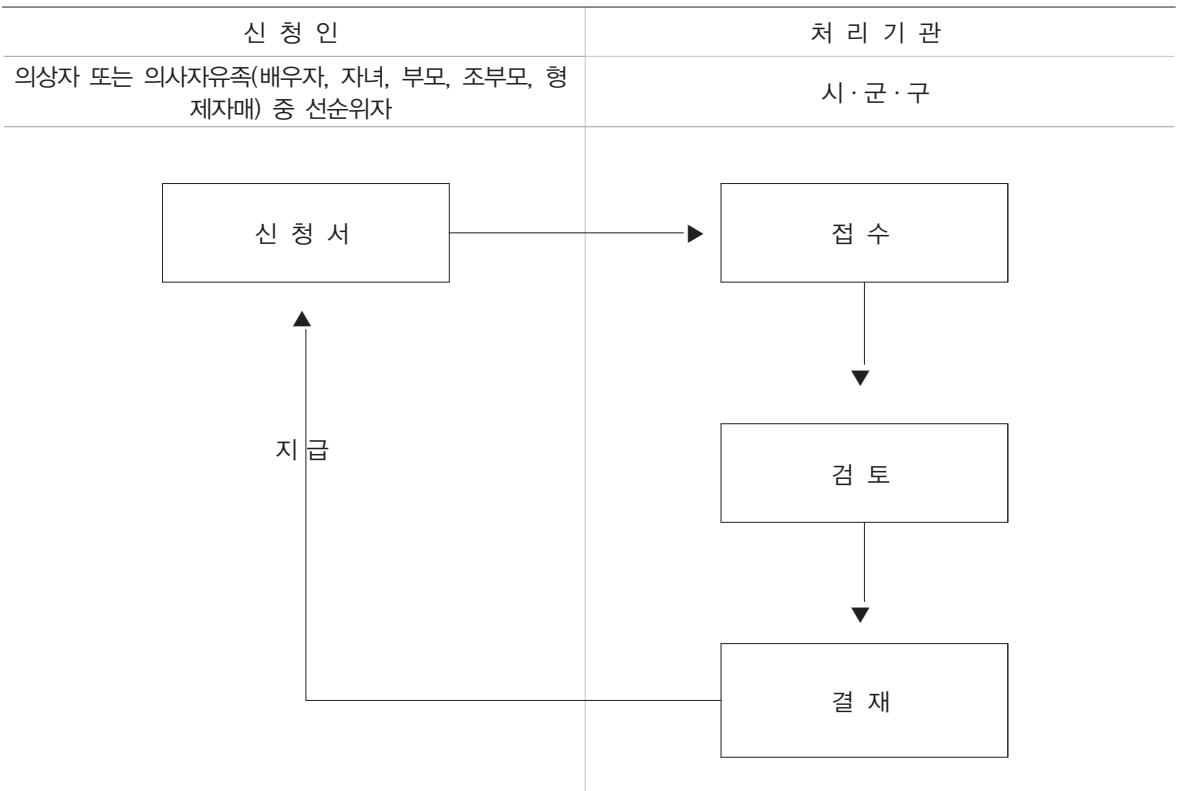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의료비반환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의사상자와의 관계		
	주소			
	계좌번호			
의 사 상 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주소			
의사상행위 일자				
의사상자 인정 결정일				
진료기관				
진료기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결정 전에 지급한 의료비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상자 증서 사본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210mm×297mm(백상지 120g/m²)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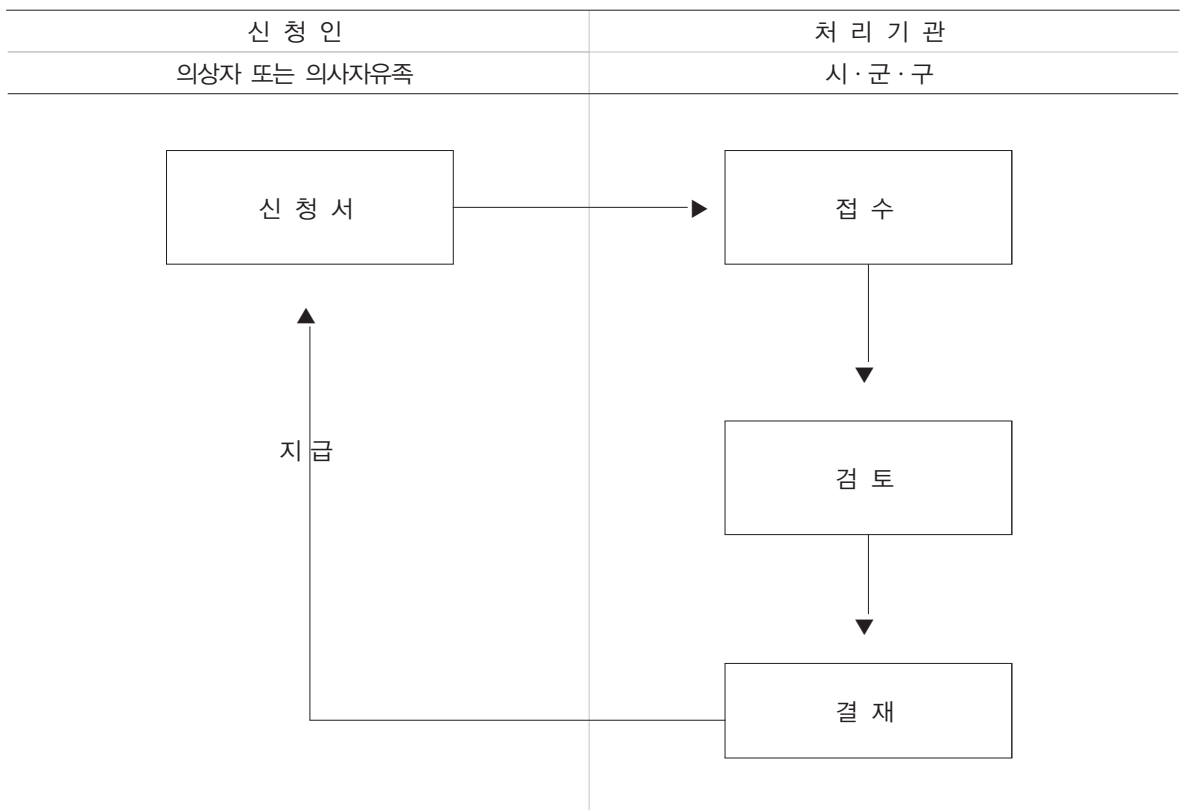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취업보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의사상자 성명 및 의사상자와의 관계			
	주소				
	최종학력	학교	과	졸업 [] 중퇴 []	
	면허 또는 자격증				
희 망 사 항	취업	직종 제1지망:	제2지망:	제3지망:	
		근무지	업체	임금 월 만원	
	직업훈련	훈련기관	직종		
		훈련기관	과정	주간 과정 [] 야간 과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보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상자 증서 사본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3. 이력서 1통 4.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 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210mm×297mm(백상지 120g/m²)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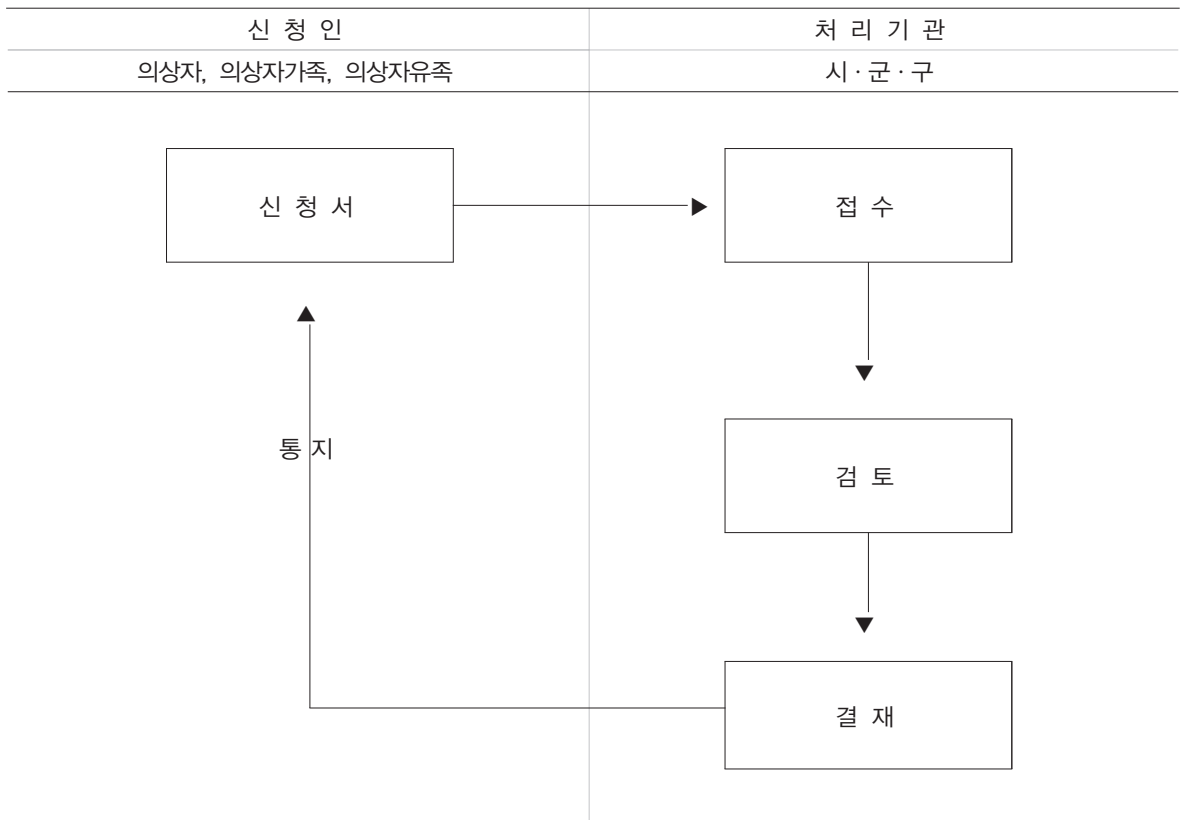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차 례

의료급여	103
의료급여법 제3조	
공직진출 지원	103
국가공무원법(제36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의2)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	
주택특별공급	10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36조)	
국립묘지 안장(이장)	10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쟁송	107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3조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2015.3.27.>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공직진출 지원

○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가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1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5.>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 제3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③ 제1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18.]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신규임용시험의 가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가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5.18.]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대상자의 각 과목별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 가.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취업지원의 대상이 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을 받아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산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5.11.18.]

주택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7. 생략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7. 생략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국립묘지 안장(이장)

●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2011.5.30., 2012.2.17., 2013.7.16., 2014.5.21., 2015.12.22.>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안장 대상자의 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장 등의 신청)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국립묘지에의 안장 신청(이장·영정봉안 및 위패봉안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장(이장·영정봉안·위패봉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망진단서·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제2호에 따라 전사증명서 또는 순직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2. 법 제5조제1항제1호 다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 전사증명서·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3. 법 제5조제1항제1호 아목·차목·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 :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서(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법 제5조제1항제1호 가목·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각 1부
5.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 개장(改葬) 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6.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이유소명서 1부 및 그 밖에 국립묘지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법 제5조제1항제1호 라목·마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행정쟁송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2. 피청구인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 ③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제2호·제5호의 사항과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적어야 한다.
- ④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거나 행정심판이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과 함께 그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 ⑤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청구의 변경)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과 참가인의 수만큼 청구변경신청서 부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청구변경신청서 부분을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청구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과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변경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⑦ 신청인은 제6항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청구의 변경결정이 있으면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7.27.]

제21조(소의 변경) ①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①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1994.7.27.>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⑥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업무 매뉴얼

인쇄일 2017년 1월
발행일 2017년 1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Tel:044-202-3251, 3258)
